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서천호 · 김종양 · 김선교
이달희 · 김은혜 · 김정재
강대식 · 조승환 · 강명구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,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, 교통카드데이터 수집·관리, 대중교통비 지원·환급,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·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,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,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, 대중교통비 지원·환급 사업,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

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등).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 마목의 대중교통시설”을 “다음 각 호의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”로, “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”를 “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: 제1조부터 제9조까지, 제10조의5, 제10조의6,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2까지, 제12조, 제15조 및 제16조

2. 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: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해운법」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

제10조의8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9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10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11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12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적용범위) <u>제2조제2호라 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 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 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적용범위) <u>다음 각 호의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-</u> ----- ----- ----- --- <u>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 에-----.</u> 1. <u>제2조제2호라목의 대중교통 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 목의 대중교통시설: 제1조부 터 제9조까지, 제10조의5, 제1 0조의6, 제10조의8부터 제10 조의12까지, 제12조, 제15조 및 제16조</u>
<u><신 설></u>	2. <u>제2조제2호마목의 대중교통 수단 및 해당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제2조제3호마 목의 대중교통시설: 제1조부 터 제9조까지</u>
제10조의5(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·운용 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제10조의5(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·운용 의무) -----

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·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·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·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 및 제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(이하 “대중교통운영자등”이라 한다)와 「전자금융거래법」

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, typical of primary-ruled notebook paper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.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해운법」에 따른 내항정기

여객운송사업자

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 및 제출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
-----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,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(이하 “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0조의9(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)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(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·합계·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)로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9(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) ① -----

-----국토교통부장관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, 업무수행,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(생략)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
제10조의10(교통카드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·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, 변조,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, 방화벽의 설치, 암호화 소프트웨어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제10조의10(교통카드데이터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어의 활용 등 관리적·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적·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 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의11(교통카드데이터관리 지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·제출·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

-----.

-----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제10조의11(교통카드데이터관리 지침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
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0조의12(대중교통비 지원 및
환급 사업) ① 국토교통부장관
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
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
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
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
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
사업(이하 “대중교통비 지원
및 환급 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
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
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
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
용 데이터의 수집·관리·제출
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
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대중교통기술연구·개발
사업의 추진) 국토교통부장관
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
기술연구·개발사업을 「국토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12(대중교통비 지원 및
환급 사업) ① 국토교통부장관
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
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제15조(대중교통기술연구·개발
사업의 추진) 국토교통부장관
또는 해양수산부장관-----

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 제4조 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 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